



# 2024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2024 통계보고서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Construction Policy

## 연구진

정대운 | 부연구위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4

## 2024 통계보고서

### 2024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등록 |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발행 | 2024년 10월 발행

발행인 | 김희수

발행처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02)3284-2600

FAX (02)3284-2620

홈페이지 [www.ricon.re.kr](http://www.ricon.re.kr)

인쇄처 | 경성문화사 (02)786-2999

I S B N | 979-11-5953-180-4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I. 서론 및 II. 조사대상 하도급제도

- 전문건설업체의 2023년도 계약금액(131조 3천억 원) 중 하도급공사 계약금액이 93조 5천억 원으로 71.2%의 비중을 차지하여 다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수직적 원하도급 거래관계를 맺고 있음. 이러한 생산구조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쟁력을 약화시켜 건설산업 전반의 성과를 낮추는 요인이 됨. 즉, 하도급 거래의 비중이 높은 건설산업에 있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
- 이 조사는 2023년도 건설하도급 거래 실적이 있는 전문건설업체 16,497개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계통추출법을 이용해 4,950개사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2024년 6월 17일부터 7월 5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분석 가능한 설문지 403부(조사대상의 8.1%)를 회수하여 분석하였고,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pm 4.82\%$ 임
  - 9개 범주에 속하는 42개 항목을 조사대상으로 함(〈표 I-2〉 참고)
  - 불공정거래의 정도를 5단계로 구분하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25점씩 감점하는 방식으로 배점하여(〈표 I-3〉 참고) 체감도 점수를 산정함(〈표 I-4〉 참고)
- 건설하도급에서 중요한 거래유형과 불공정거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행위를 업계 관계자, 전문건설협회 담당자 및 전문가 간의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조사범주를 선정하였음
  -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및 부당감액
  -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제약하는 불공정한 특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이번 조사에서는 유보금 등의 명목으로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일을 지연하는 약정을 부당특약 범주에 추가
  - 원도급업체가 법령 또는 하도급계약으로 정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원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그리고 하도급대금 연동에 대한 범주도 이번 조사에 추가

## III.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분석

- 42개 항목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체감도 평균 점수는 72.0점으로 조사되었음
  - 2023년 체감도 평균 점수 67.9점에 비해 4.1점 상승(〈표 III-1〉 참고).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2023년 건설기성액의 최고치 달성과 표준하도급계약서 다양화 및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계약 결과 공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도입 등 다양한 하도급 관련 공정거래 정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작년 대비 8개 범주 모두 체감도 점수가 상승하였음(〈표 III-3〉 참고).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렬하면 ①부당한 반품(78.9점), ②부당한 위탁취소(76.1점), ③보복조치 금지(74.9점), ④하도급대금 연동제(74.8점), ⑤부당한 감액(74.3점), ⑥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72.7점), ⑦하도급대금 지급(68.7점), ⑧부당특약(68.4점), ⑨하도급대금 조정(68.2점)의 순서임
  - 하도급대금 지급, 부당특약, 하도급대금 조정의 3가지 범주가 평균 점수 72.0점보다 낮음
  -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는 2021년 이후 최하위 지속,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는 7순위, 부당특약 범주는 8순위에 해당하는데 역시 하도급대금 관련 특약 항목의 순위가 낮음
  - 새롭게 추가된 하도급 연동제 범주는 4순위로 중간 순위를 보이나 제도 실행의 초기에 불과하여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탈법행위 사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구간분석 결과, 부당특약(11개 항목 중 11개), 하도급대금 지급(4개 항목 중 3개), 하도급대금 조정(3개 항목 중 3개)의 3개 범주에 속하는 17개 항목이 7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III-15〉 및 〈표 IV-2〉 참고). 70점 이하 17개 항목(42개 항목의 40.5%)은 공정거래 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관리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71점 이상 80점 이하 항목은 25개(42개 항목의 59.5%)로서 하도급대금 결정(8개 항목 중 8개), 부당한 위탁취소(2개 항목 중 2개), 부당감액(7개 항목 중 7개), 부당반품(4개 항목 중 4개), 하도급대금 지급(4개 항목 중 1개), 보복조치의 금지(1개 항목 중 1개), 하도급대금 연동(2개 항목 중 2개) 범주에 속함
  - 81점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은 없음
- 42개 항목 중 체감도 점수가 높은 Top 5 분석에서는 부당반품 4개, 부당한 위탁취소 1개가 포함되었고(〈표 III-17〉 참고), 체감도 점수가 낮은 Bottom 5 분석에서는 부당특약 3개, 하도급대금 지급 2개가 포함됨(〈표 III-18〉 참고)
  - 부당특약 범주에 새롭게 추가한 ‘기성금, 준공금 등의 일부를 유보하여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지급하는 약정’이 최하위 항목으로 조사됨
  - 이는 유보금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례조사를 통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IV. 결론

- 2024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에서도 하도급대금(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및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낮게 나타남
  - 하도급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행위는 비교적 적은 대금에 불과하더라도 하도급업체에 큰 피해를 미칠 수 있음
  - 더욱이 하도급업체와 연계된 건설근로자의 생계위협과 자재·장비업체의 부도, 저가의 불량자재 사용으로 인한 품질 저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따라서 하도급업체가 자재·장비를 조달하고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건설하도급의 공정거래 정착이 건설산업의 안정과 품질을 향상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할 것임

# 목 차

2024 통계보고서

## 제1장 | 서 론 / 1

- 1. 조사배경 및 목적 ..... 3
- 2. 조사개요 ..... 4

## 제2장 | 조사대상 하도급제도 / 7

## 제3장 |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분석 / 19

- 1. 체감도 평균 점수 ..... 21
- 2. 범주별 체감도 점수 ..... 23
- 3. 구간분석 ..... 31
- 4. Top 5 및 Bottom 5 분석 ..... 33

## 제4장 | 결 론 / 37

## 참고문헌 / 44

## 부록 / 45

# 표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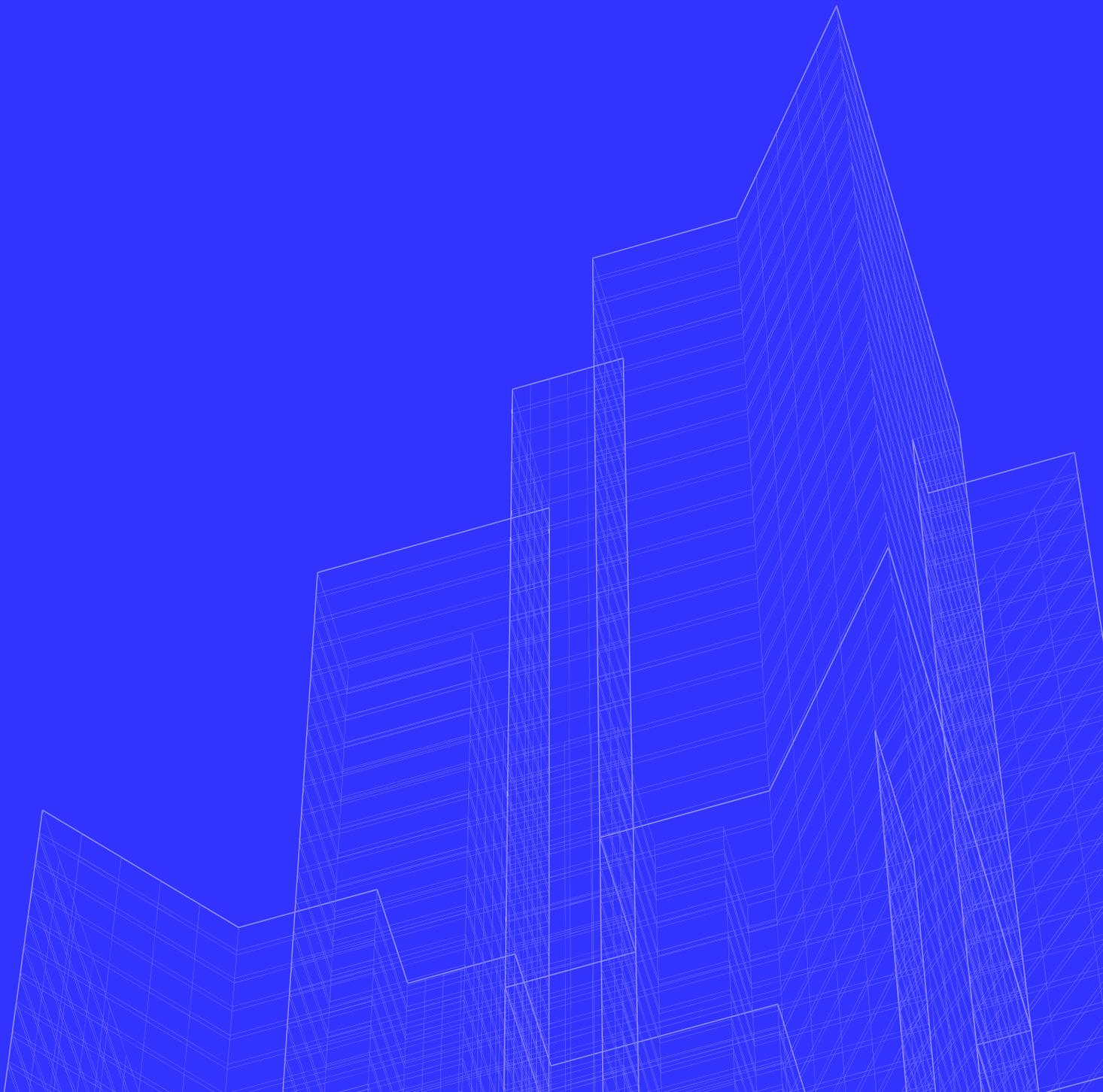
2024 통계보고서

〈표 I-1〉 조사대상 범주 및 항목	4
〈표 I-2〉 조사대상 항목 상세내용	5
〈표 I-3〉 단계별 배점	6
〈표 I-4〉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산정방식	6
〈표 III-1〉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 점수	21
〈표 III-2〉 항목별 체감도 점수	22
〈표 III-3〉 범주별 연도별 체감도 점수	23
〈표 III-4〉 범주별 체감도 점수 순위	23
〈표 III-5〉 부당특약 항목 체감도 점수 순서	24
〈표 III-6〉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항목 체감도 점수 순서	25
〈표 III-7〉 부당한 위탁취소 항목 체감도 점수 순서	25
〈표 III-8〉 부당감액 항목 체감도 점수 순서	26
〈표 III-9〉 부당반품 항목 체감도 점수 순서	26
〈표 III-10〉 하도급대금 지급 항목 체감도 점수 순서	27
〈표 III-11〉 하도급대금 조정 항목 체감도 점수 순서	28
〈표 III-12〉 보복조치 금지 항목 체감도 점수	28
〈표 III-13〉 하도급대금 연동제 항목 체감도 점수	29
〈표 III-14〉 범주별 항목의 체감도 점수	30
〈표 III-15〉 체감도 점수 구간별 분포	31
〈표 III-16〉 항목별 체감도 점수 순서	33
〈표 III-17〉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상위 5개 항목	34
〈표 III-18〉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하위 5개 항목	35
〈표 IV-1〉 범주별 체감도 점수	40
〈표 IV-2〉 범주별 체감도 점수 분포 현황	41

# I

## 서론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개요





# 제1장

## 서론

### 1. 조사배경 및 목적

- 대한전문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들의 2023년 기준 전체 계약금액(131조 3천억 원) 중 하도급 계약금액(93조 5천억 원)이 71.2%를 차지하여 원도급 계약금액(37조 8천억 원, 28.8%)과 비교할 때 하도급거래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음
  - 건설생산은 다양한 생산요소, 기술, 인력의 결합을 이용하는 복합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건설업체는 매번 수주를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므로 대량생산에 따른 경제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건설공사마다 새로운 생산조직을 구성하여 자원을 조달해야 하는 특성이 있음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는 건설공사의 특성에 맞추어 생산방식과 생산요소를 구성하게 되는데, 전체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하위 공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건설업체에 다시 도급하여 시공하게 하는 하도급방식이 일반적임
  - 발주자로부터 직접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를 ‘원도급업체(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수급인,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 원도급업체로부터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체를 ‘하도급업체(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수급인, 하도급법에서는 수급사업자)’로 구분함
  
- 대다수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업체로 원도급업체인 종합건설업체와 수직적 관계를 맺고 있음. 이러한 생산구조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경쟁력을 약화시켜 건설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침. 또한 양측 기업 소속 구성원 간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그러므로 건설산업의 원·하도급 불공정거래는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임
  - 특히, 공사비 상승에 따라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건설수수 감소 등 건설시장의 불안정이 장기화되는 최근 상황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공정거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비중이 높은 건설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실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본 조사는 2023년도 하도급공사 실적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9개 범주 42개 항목에 걸쳐 하도급업체가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인지하는 공정거래 정도를 체감도 점수로 전환하여 건설하도급의 공정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조사개요

### □ 조사기업

- 전문건설업체 중 2023년도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 16,497개사(2024년 5월 기준)를 모집단으로 하여 계통추출법을 이용해 4,950개사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2024년 6월 17일부터 7월 5일 사이에 조사를 진행하였음
- 유효하게 분석 가능한 설문지 403부를<sup>1)</sup> 회수하여 분석하였음(표본 4,950개 중 8.1%에 해당함).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4.82%임

### □ 체감도 조사

- 9개 범주(〈표 I-1〉 참고)에 속하는 42개 항목(〈표 I-2〉 참고)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음(설문지 전체 내용은 부록을 참고)

〈표 I-1〉 조사대상 범주 및 항목

분 야	범 주	항 목
부당특약	부당특약	11
3배 손해배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8
	부당한 위탁취소	2
	부당감액	7
	부당반품	4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지급	4
	하도급대금 조정	3
보복조치 금지	보복조치 금지	1
하도급대금 연동제	하도급대금 연동제	2
전 체		42

- 2023년도 1년간 발생한 건설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함
- 설문조사 대상 업체 선정과 조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함
- 조사대상 42개 항목의 상세내용은 다음의 〈표 I-2〉와 같음

1) 회수된 설문지 403부는 지역별로 서울 83부, 부산 31부, 대구 20부, 인천 27부, 광주 14부, 대전 18부, 울산 10부, 경기 101부, 강원 17부, 충북 27부, 충남 7부, 전북 2부, 전남 6부, 경북 10부, 경남 14부, 제주 10부, 세종 6부이다.

〈표 1-2〉 조사대상 항목 상세내용

범주	항 목
1. 부당특약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 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③ 입찰내역 미기재사항 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④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부담 약정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⑦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⑧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책임부담 약정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 약정
	⑩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⑪ 기성금, 준공금 등의 일부를 유보하여 준공 후나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지급하는 약정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② 일방적으로 일정금액 할당 후 해당금액 제외된 하도급대금 결정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④ 거래조건 착오, 타 견적 또는 거짓 견적서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결정
	⑤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따른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⑧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 인하 등의 사유로 불리한 하도급대금 결정
3. 부당한 위탁취소	①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4. 부당한 감액	① 발주취소, 경제상황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② 합의 성립 전의 위탁 부분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한 하도급대금 감액
	③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⑤ 원도급사의 물품, 장비 등을 구매·사용하게 한 후 적정대금 이상의 하도급대금 공제
	⑥ 대금지급 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⑦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5. 부당한 반품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한 목적물 등의 반품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6. 하도급대금 지급	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②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④ 공사대금 중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7. 하도급대금 조정	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
	②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③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는 행위
8. 보복조치 금지	① 원사업자가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하도급대금 연동제	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유무

□ 조사 및 분석방법

- 조사대상 항목별로 불공정거래의 발생빈도를 5단계(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로 구분하고 응답자가 선택하게 함
- 공정거래 체감 단계별로 <표 I-3>과 같이 불공정거래가 '전혀 없다'를 100점으로 하고 불공정거래가 증가하는 단계별로 25점씩 감점하는 방식으로 배점하여 불공정거래가 '매우 많다'의 경우 0점을 배점함

<표 I-3> 단계별 배점

단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배점	100	75	50	25	0

- <표 I-4>와 같은 방식으로 응답자가 선택한 항목별 응답을 대응하는 점수로 전환하여 합계를 구하고, 그 합계를 전체 응답수로 나눈 값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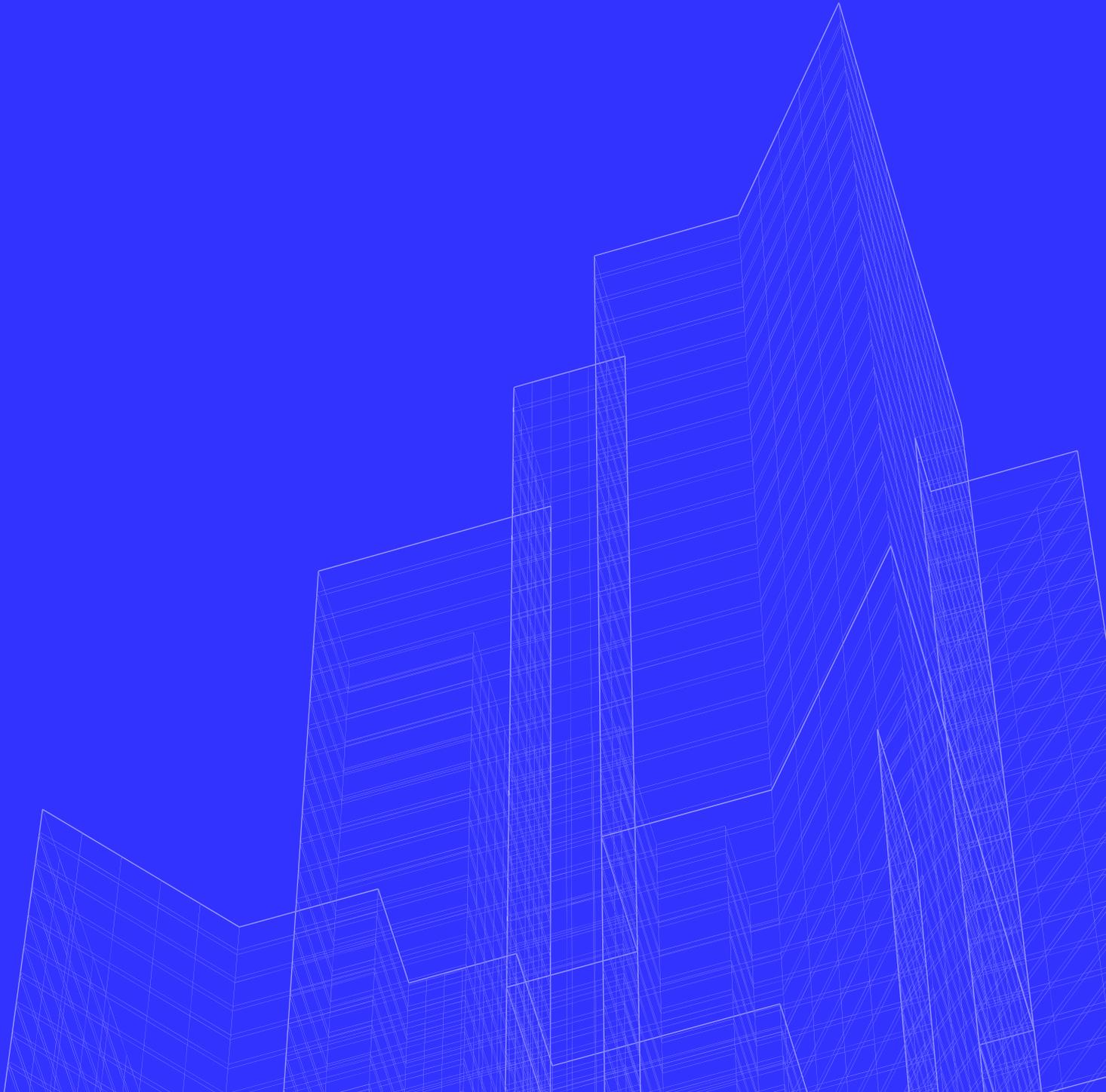
<표 I-4>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산정방식

전혀 (없다 응답수	× 100 +	별로 없다 응답수	× 75 +	보통 응답수	× 50 +	다소 있다 응답수	× 25 +	매우 많다 응답수	× 0) /	전체 응답수	=
------------------	---------	-----------------	--------	-----------	--------	-----------------	--------	-----------------	--------	-----------	---

2024 통계보고서

# II

## 조사대상 하도급제도





## 제2장

# 조사대상 하도급제도

- 건설하도급에서 중요한 거래 유형과 불공정거래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항목으로 함. 조사항목은 2016년 최초 조사 당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이후 일부 항목이 추가되었음
  -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및 부당감액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함. 기술자료 제공금지 사항은 건설하도급과 관련이 많지 않아 제외하였음
  -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일반조항 외에 하도급업체의 권리와 이익을 제약하는 불공정한 특수조건 즉 부당특약을 강제하는 행위를 조사항목으로 선정함. 2024년 조사에서는 유보금 등의 명목으로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일 지연하는 약정을 부당특약 부문에 추가함
  -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계약이 변경되어 원도급업체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일반적으로 증액)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적법하게 조정하지 않는 행위를 조사항목으로 선정함
  -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이의제기와 클레임에 따른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 등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8년 조사에서 보복조치 금지를 조사항목으로 선정하였음. 보복조치 금지는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에도 포함되어(2018. 1. 16. 개정)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2023. 7. 18. 개정)에 대한 미행위 여부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된 탈법행위에 대한 사례 유무도 조사항목에 추가함
  
- 3배 손해배상
  - 당초 하도급법상 3배 손해배상제도를 기술유용(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2011. 6. 30. 시행)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음(2013. 11. 29. 시행). 이후 보복조치를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에 포함하였음(2018. 7. 17. 시행)
  - 기술유용은 건설공사에서 중요 이슈로 다루지 않아 조사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음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등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손해액의 3배 안에서 배상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와 별개로 당사자 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음

- 하도급법에 규정된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음

**하도급법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 금지)제1항,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1조(감액금지)제1항·제2항,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제4항 및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 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절한 구매대금 또는 적절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부당특약

- 원·하도급 당사자 간 합의를 명분으로 삼아 원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특약의 형태로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이 존재하였음. 그러나 특약은 그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당사자 간 합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하기 어려웠던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설정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4년 2월 14일 자로 시행함(하도급법 제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 부당특약 금지조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당특약을 설정한 원도급업체에 특약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과징금(제25조의3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조항을 함께 도입하였음
-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23A)에 따르면, 정부 등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자 특수조건에 유보금을 설정하거나 현장설명 문서에 유보금 조항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 유보금과 관련해서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법 대금 지급 규정의 취지에 위배됨
-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음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

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계약의 원칙에 따라 상호 간에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바, 하도급업체는 계약에 따른 건설공사를 이행하고 원도급업체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무로 함. 하도급업체에 있어서 공사수행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 가능성, 지급되리라는 예측은 하도급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주요한 근거가 됨.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의 지급,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의무 위반이 되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고 일반화된다면 시장거래의 계속성이 위협받고 신뢰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함
- 또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체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이 훼손될 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의 소득수준에도 영향을 주게 됨. 특히 건설업 특성 상 일용노동자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도급대금 지급과 조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조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음(하도급법 제13조 및 제16조)
- 하도급법 제16조의2는 종전에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이후 하도급법(2018. 1. 16. 개정)에서는 원재료 가격을 포함하여 공급원가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인건비나 경비 등 원재료 이외 항목의 가격변동으로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를 확대하였음(2018.7.17. 시행).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나 적정임금제 도입과 같은 정책적, 경제적 요인에 따른 원가상승 영향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음
-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음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이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sup>2)</sup>

1. 목적물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3.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 보복금지

-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원도급업체가 해당 하도급업체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계약당사자인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로 하도급법에서 규제하고 있음

2) 2018.1.16. 개정 전의 하도급법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보복조치 금지는 3배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되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조사함
-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음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16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조 제11항의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 2의2.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3.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 □ 하도급대금 연동제

-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 주요내용은 ‘주요 원재료’와 ‘하도급대금 연동’의 정의, 서면 기재사항에 추가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하도급대금 연동의 예외 사항 등임.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2023)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를 활용함

#### 제2조(정의)

-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 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을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3.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③ 법 제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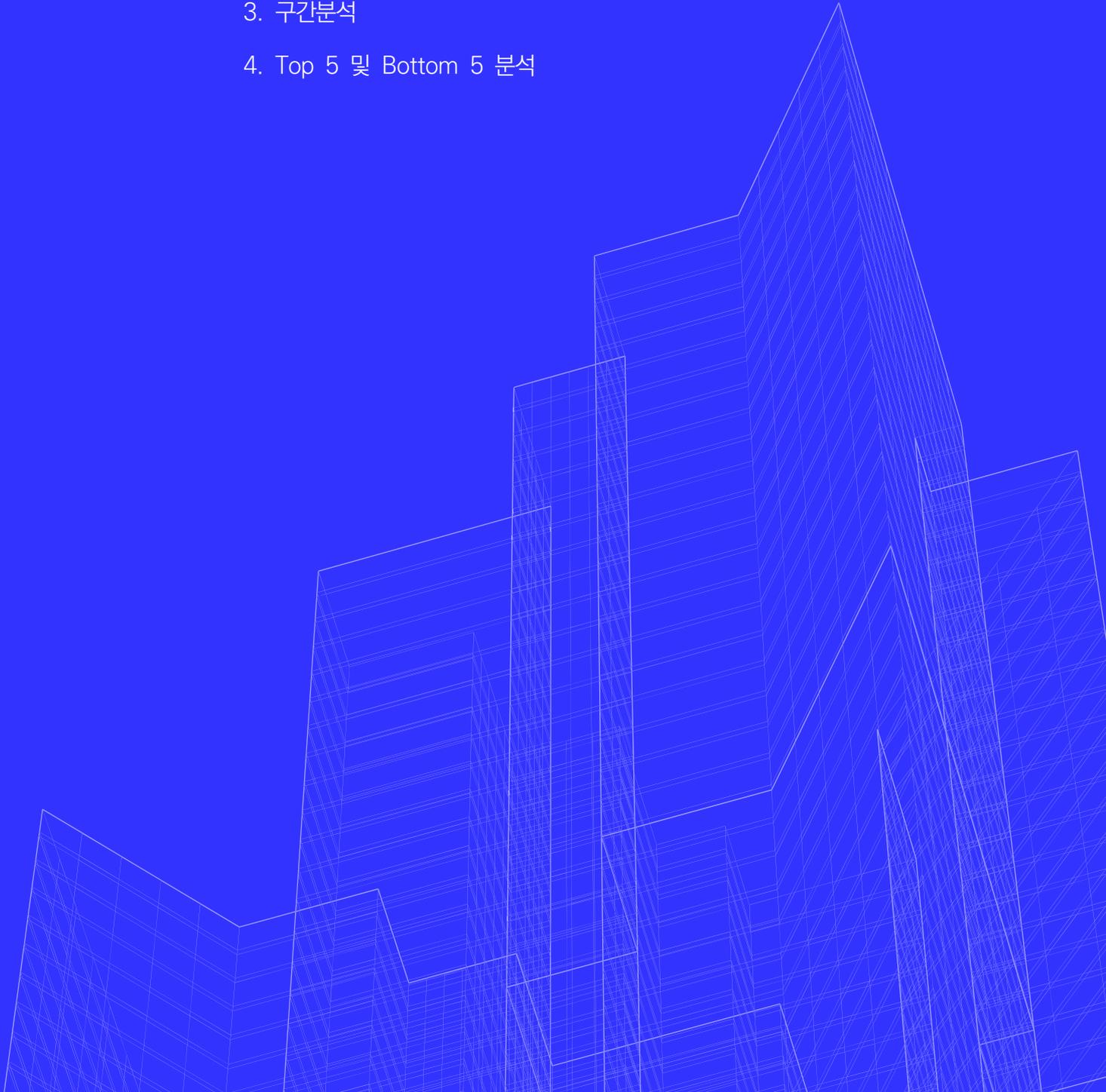
④ 법 제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III

##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분석

1. 체감도 평균 점수
2. 범주별 체감도 점수
3. 구간분석
4. Top 5 및 Bottom 5 분석





# 제3장

##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분석

### 1. 체감도 평균 점수

- 2024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대상 42개 항목 전체를 아우르는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 점수는 72.0점으로 조사되었음(〈표 III-1〉 참고)
  - 2023년 조사된 체감도 평균 점수 67.9점에 비해 4.1점 상승(↑)한 수치임
  -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감액, 부당한 반품,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의 조정, 보복조치 금지 등 8개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하였으며, 개별 항목에서도 모든 기존 39개 항목 전체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 이는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2023년 건설기성액의 최고치 달성과 같은 해에 도입된 표준하도급계약서 다양화 및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계약 결과 공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도입 등 다양한 하도급 관련 공정거래 정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표 III-1〉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 점수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체감도 점수	67.9	68.3	70.2	73.2	72.5	68.8	67.9	72.0
전년 대비 증감		0.4	1.9	3.0	-0.7	-3.7	-0.9	4.1

- 42개 항목별 체감도 점수는 〈표 III-2〉와 같음
  - 체감도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설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정도가 높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함. 다만, 체감도 점수는 절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점수이며, 체감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서 절대적 기준으로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예를 들면 부당한 반품(5) 범주 ①번 항목(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은 79.8점으로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는데, 응답자들이 다른 항목에 비해 공정거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 부당특약(1) 범주 ⑩번 항목(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의 일부를 유보하여 준공 후 또는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지급하는 약정)은 64.8점으로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는데, 응답자들이 다른 항목에 비해 공정거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나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표 III-2〉 항목별 체감도 점수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2024	증감	2023	증감	2022	증감	2021	증감	2020	
1.부당 특약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70.6	↑	65.2	↓	68.2	↑	67.7	↑	61.0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69.3	↑	64.8	↓	66.4	↓	68.38	↑	66.1	
	③ 입찰내역 미기재사항 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7.5	↑	63.9	↓	67.6	↑	67.0	↓	67.7	
	④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부담 약정	70.5	↑	67.7	↓	70.1	↓	71.19	↓	71.6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9.2	↑	66.0	↓	67.9	↓	68.0	↓	70.9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5.7	↑	63.1	↑	62.4	↓	63.9	↓	65.2	
	⑦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70.3	↑	66.1	↓	69.3	↓	71.3	↓	71.8	
	⑧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책임부담 약정	69.3	↑	66.3	↓	67.0	↓	68.40	↓	73.2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 약정	67.7	↑	63.1	↓	66.5	↑	65.84	↓	67.3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67.1	↑	61.6	↓	62.5	↓	64.6	↓	67.1	
	⑪ 기성금, 준공금 등의 일부를 유보하여 준공 이후나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지급하는 약정	64.8									
2.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73.7	↑	67.0	↑	66.6	↓	68.2	↓	71.1	
	② 일방적 일정금액 할당 후 해당금액 제외된 하도급대금 결정	72.3	↑	67.1	↓	67.0	↓	70.2	↓	70.4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75.1	↑	68.8	↓	70.8	↓	73.2	↓	76.8	
	④ 거래조건 착오나, 타 견적 또는 거짓 견적서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결정	73.8	↑	67.8	↓	69.5	↓	75.4	↑	73.6	
	⑤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71.0	↑	63.1	↓	64.6	↓	65.9	↓	66.5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따른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71.3	↑	66.8	↓	68.9	↓	72.7	↑	72.5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72.0	↑	66.6	↓	67.7	↓	71.2	↑	70.0	
	⑧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인하 등의 사유로 불리한 하도급대금 결정	72.6	↑	68.7	↓	70.0	↓	75.1	↑	74.3	
3.부당한 위탁취소	①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75.4	-	75.4	↑	73.7	↓	78.2	↓	79.9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76.9	↑	73.6	↑	73.1	↓	78.7	↓	80.2	
4.부당 감액	①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2.8	↑	69.7	↓	69.8	↓	73.5	↓	75.7	
	② 합의 성립 전 위탁부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 하도급대금 감액	72.6	↑	69.7	↓	71.2	↓	75.6	↓	76.1	
	③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76.2	↑	72.5	↑	72.4	↓	80.0	↓	80.3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3.3	↑	69.7	↓	71.5	↓	78.1	↑	77.5	
	⑤ 원도급사의 물품, 장비 등을 구매·사용하게 한 후 적정대금 이상의 하도급대금 공제	75.2	↑	72.8	↑	72.6	↓	78.8	↓	79.4	
	⑥ 대금지급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5.1	↑	71.2	↓	74.1	↓	79.8	↓	80.9	
	⑦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74.6	↑	70.7	↓	73.2	↓	79.4	↓	79.8	
5.부당 반품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79.8	↑	76.8	↑	74.9	↓	81.0	↓	83.4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78.2	↑	74.6	↑	74.2	↓	80.1	↓	81.7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79.4	↑	75.3	↑	75.1	↓	81.4	↓	82.7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78.3	↑	73.4	↓	76.5	↓	81.6	↓	82.1	
6.하도급 대금 지급	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70.2	↑	66.0	↑	65.3	↓	73.17	↑	71.8	
	②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67.0	↑	63.9	↑	62.8	↓	66.3	↑	65.8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64.8	↑	60.9	↓	61.4	↓	64.1	↓	64.1	
	④ 공사대금 중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72.9	↑	69.8	↑	68.1	↓	73.7	↓	74.3	
7.하도급 대금 조정	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	68.3	↑	64.1	↑	63.2	↓	66.4	↓	68.3	
	②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68.5	↑	63.7	↓	64.2	↓	66.0	↓	69.0	
	③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음	67.8	↑	64.4	↑	64.2	↓	65.9	↓	67.8	
8.보복조치 금지	① 원사업자가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74.9	↑	67.7	↓	70.5	↓	76.5	↓	76.6	
9.하도급 대금 연동제	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는 행위	73.7									
	②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유무	75.9									

## 2. 범주별 체감도 점수

□ 9개 범주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표 III-3>과 같음

<표 III-3> 범주별 연도별 체감도 점수

범주	1. 부당 특약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3. 부당한 위탁취소	4. 부당한 감액	5. 부당한 반품	6. 하도급대금 지급	7. 하도급대금 조정	8. 보복조치 금지	9. 하도급대금 연동제
2024	⑧68.4	⑥72.7	②76.1	⑤74.3	①78.9	⑦68.7	⑨68.2	③74.9	④74.8
2023	⑦64.8	⑤67.0	②74.5	③70.9	①75.0	⑥65.2	⑧64.1	④67.7	
2022	⑥66.8	⑤68.1	②73.4	③72.1	①75.2	⑦64.4	⑧63.9	④70.5	
2021	⑦67.6	⑤71.5	②78.4	③77.9	①81.0	⑥69.3	⑧66.1	④76.5	
2020	⑧68.2	⑤71.9	②80.1	③78.5	①82.5	⑥69.0	⑦68.4	④76.6	
2019	⑧62.9	⑤68.2	②80.7	③77.7	①83.0	⑥65.0	⑦63.2	④75.0	
2018	⑦60.8	⑤67.0	②78.8	③76.1	①80.6	⑥65.1	⑧58.4	④73.2	
2017	⑦61.2	④66.3	②78.0	③74.4	①78.6	⑤65.3	⑥61.5	-	

-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보면 부당한 반품(5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78.9점으로 가장 높음(2017년부터 2023년까지 조사와 같은 순위). 다만, 2019년 이후에 점차 감소하다가 2024년 다소 상승하였음. 다음으로 부당한 위탁취소(3범주)도 76.1점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체감도를 보이고 있음. 부당감액(4범주)은 74.3점으로 순위는 두 칸 낮아졌고, 보복조치 금지(8범주)가 74.9점으로 순위가 한 칸 높아졌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2범주) 72.7점, 하도급대금 지급(6 범주) 68.7점, 부당특약(1범주) 68.4점, 하도급대금 조정(7 범주) 68.2점의 순으로 낮은 순위를 보였음. 새롭게 추가된 하도급대금 연동제(9범주)는 74.8점으로 4순위를 나타냄. 아래 <표 III-4>는 범주별 점수가 높은 순서로 정리한 것임

<표 III-4> 범주별 체감도 점수 순위

순위	범 주	점수
1	부당한 반품	78.9
2	부당한 위탁취소	76.1
3	보복조치 금지	74.9
4	하도급대금 연동제	74.8
5	부당감액	74.3
6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72.7
7	하도급대금 지급	68.7
8	부당특약	68.4
9	하도급대금 조정	68.2

- 1순위(부당한 반품), 2순위(부당한 위탁취소)는 2023년 조사와 순위가 같음
-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는 2021년 이후부터 2024년까지 최하위로 나타났음
- 부당특약은 2023년 64.8점 대비 2024년 68.4점으로 3.6점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와 함께 하위권에 위치하여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
- 전체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 점수 72.0점을 기준으로 부당한 반품(78.9점), 부당한 위탁취소(76.1점), 보복조치 금지(74.9점), 하도급대금 연동제(74.8점), 부당한 감액(74.3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72.7점)의 6가지 범주는 기준 이상에 해당함. 반면, 하도급대금 지급(68.7점), 부당특약(68.4점), 하도급대금 조정(68.2점)의 3가지 범주는 전체 체감도 평균 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등 하도급대금 관련 범주와 부당특약 범주의 점수가 특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하도급대금 및 부당특약 관련 불공정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함

□ 부당특약 범주의 항목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서로 배열하면 <표 III-5>와 같음

<표 III-5> 부당특약 항목 체감도 점수 순서

항 목	체감도 점수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70.6
④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부담 약정	70.5
⑦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70.3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69.3
⑧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책임부담 약정	69.3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9.2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약정	67.7
③ 입찰내역 미기재사항 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7.5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67.1
⑥ 제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5.7
⑪ 기성금, 준공금 등의 일부를 유보하여 준공 이후나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지급하는 약정	64.8

- 부당특약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68.4점으로 조사대상 9개 범주 중 8순위에 해당함
- 체감도 점수는 2023년(64.8) 대비 3.6점 상승(↑)함
-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70.6점)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고, 원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의 일부를 유보하여 준공 후 또는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지급하는 약정(64.8점)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음
-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11개 항목 중에서 11개 항목 모두 체감도 점수가 전체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 점수 72.0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즉, 부당특약 관련 항목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냄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서로 배열하면 <표 III-6>과 같음

<표 III-6>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항목 체감도 점수 순위

항 목	체감도 점수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75.1
④ 거래조건 착오나, 타 견적 또는 거짓 견적서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결정	73.8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73.7
⑧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인하 등의 사유로 불리한 하도급대금 결정	72.6
② 일방적 일정금액 할당 후 해당금액 제외된 하도급대금 결정	72.3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72.0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따른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71.3
⑤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71.0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 점수는 72.7점으로 조사대상 9개 범주 중 6 순위에 해당함
- 2023년(67.0점) 대비 5.7점 상승(↑)하였으며, 전체 체감도 평균 점수 72.0점보다 높음
- 세부 항목의 경우에 72.0점 이상 항목이 6개, 72.0점 미만에 해당하는 항목이 2개로 나타났음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항목의 체감도 점수(75.1점)가 가장 높고,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항목의 체감도 점수(71.0점)가 가장 낮음
- 2017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세부 항목의 체감도 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남
-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71.0점) 항목이 수년 동안 가장 하위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직적 관계로 인한 일방적 하도급대금 결정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됨

- 부당한 위탁취소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하면 <표 III-7>과 같음

<표 III-7> 부당한 위탁취소 항목 체감도 점수 순위

항 목	체감도 점수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76.9
①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75.4

- 부당한 위탁취소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 점수는 76.9점으로 조사대상 9개 범주 중 체감도 점수가 2순위에 해당함
- 체감도 점수가 2023년(74.5점) 대비 2.4점 상승(↑)하여 전체 체감도 평균 점수 72.0점보다 높음
-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76.9점),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75.4점)의 순이며, 모두 전체 체감도 평균 점수 72.0점보다 높게 나타났음
- 건설공사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범주보다 상대적으로 체감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당감액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한 결과는 <표 III-8>과 같음

<표 III-8> 부당감액 항목 체감도 점수 순서

항 목	체감도 점수
③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76.2
⑤ 원도급사의 물품, 장비 등을 구매·사용하게 한 후 적정대금 이상 하도급대금 공제	75.2
⑥ 대금지급 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5.1
⑦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74.6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3.3
①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2.8
② 합의 성립 전 위탁부분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한 하도급대금 감액	72.6

- 부당감액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 점수는 74.3점으로 조사대상 9개 범주 중 체감도 점수가 5순위에 해당함
- 2023년(70.9점) 대비 3.4점 상승(↑)하여 전체 체감도 평균 점수 72.0점보다 높음
-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항목의 체감도 점수(76.2점)가 가장 높고, 합의 성립 전 위탁부분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한 하도급대금 감액 항목의 체감도 점수(72.6점)가 가장 낮음
- 부당감액 범주에 속하는 7개 항목 모두의 체감도 점수가 전체 체감도 점수(72.0점)보다 높음
- 다른 범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공정거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나, 여전히 부당한 감액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함

□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한 결과는 <표 III-9>와 같음

<표 III-9> 부당반품 항목 체감도 점수 순서

항 목	체감도 점수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79.8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79.4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78.3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78.2

- 부당반품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 점수는 78.9점으로 조사대상 9개 범주 중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2016년 체감도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2024년 현재 조사까지 1위를 지속하고 있음
- 2023년 체감도 점수(75.0점)에서 3.9점 상승(↑)하여 전체 체감도 평균 점수(72.0점)보다 높음
-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항목의 체감도 점수(79.8점)가

가장 높고,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항목의 체감도 점수(78.2점)가 가장 낮음

- 부당반품에 속하는 4개 항목 모두 체감도 평균 점수 72.0점보다 높은 78점 이상으로 조사됨
- 건설공사의 경우 품질문제는 하자보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심각한 부실공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품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한 결과는 <표 III-10>과 같음

<표 III-10> 하도급대금 지급 항목 체감도 점수 순위

항 목	체감도 점수
④ 공사대금 중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72.9
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70.2
②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67.0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64.8

-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의 체감도 점수는 68.7점으로 2023년(65.2점) 대비 3.5점 상승(↑)하여 조사대상 9개 범주 중 7순위에 해당함
- 전체 체감도 평균 점수(72.0점)보다 낮으며,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에 속하는 4개 항목 중 3개 항목이 전체 체감도 평균 점수보다 낮음
- 공사대금 중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항목의 체감도 점수 (72.9점)가 가장 높고,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항목의 체감도 점수 (64.8점)가 가장 낮음
- 전반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법정기일(15일) 또는 계약문서 상의 약정기일을 잘 지키지 않는 불공정행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즉,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아니지만, 하도급대금을 지연시켜 지급하는 불공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함
- 이는 자재가격 급등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문제로 인해 건설시장 전반이 불안정성이 큰 상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은 중소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가계의 생활자금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됨
- 따라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한 결과는 <표 III-11>과 같음

<표 III-11> 하도급대금 조정 항목 체감도 점수 순서

항 목	체감도 점수
②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68.5
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	68.3
③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음	67.8

-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의 체감도 점수는 68.2점으로 2023년(64.1점) 대비 4.1점 상승(↑)하였으나, 조사대상 9개 범주 중 9순위로 가장 하위에 해당함
- 전체 체감도 평균 점수(72.0점)보다 낮아 부당특약,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와 함께 지속적으로 하위권에 해당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에 속하는 3개 항목 모두 전체 체감도 평균 점수(72.0점)에 미치지 못함
-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음 항목(67.8점),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 항목(68.3점),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항목(68.5점)의 순으로 체감도가 낮게 나타남
- 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업체 사이에 조정된 계약금액을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업체에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법정 기한(30일) 내에 조정하지 않는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높게 발생하고 있는 것임
- 더욱이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조정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건설공사는 설계, 공사기간, 물가 등 예상하지 못한 변화로 인해 계약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원도급업체가 변경내용을 하도급계약에 반영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가 손해를 입게 됨
-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라 공사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주어야 할 증액분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불공정행위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조정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거나 조정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정부 및 관련 기관 등의 주의 깊은 관찰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보복조치 금지 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체감도 점수는 <표 III-12>와 같음

<표 III-12> 보복조치 금지 항목 체감도 점수

항 목	체감도 점수
① 원사업자가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74.9

- 보복조치 금지 범주의 체감도 점수는 74.9점으로 2023년(67.7점) 대비 7.2점 상승(↑)하여 8개 범주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

- 원도급업체의 보복조치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불공정행위 노출을 감추기 위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

□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속하는 항목의 체감도 점수는 <표 III-13>와 같음

<표 III-13> 하도급대금 연동제 항목 체감도 점수

항 목	체감도 점수
②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유무	75.9
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는 행위	73.7

- 하도급대금 연동제 범주의 체감도 점수는 74.8점으로 전체 체감도 평균 점수(72.0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조사대상 9개 범주 중 4순위에 해당하였음
- 2024년 체감도 조사에서 처음 포함한 항목으로 2023년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실행된 이후 아직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체감도를 나타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항목의 체감도(75.9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는 행위(73.7점)보다 다소 높았음
- 단, 해당 항목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행 초기에 불과하여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탈법행위 사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표 III-14>는 조사대상 9개 범주별로 각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서로 배열하여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 III-5>에서 <표 III-13>까지를 종합한 것임

<표 III-14> 범주별 항목의 체감도 점수

범 주	항 목	체감도 점수
1. 부당특약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70.6
	④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부담 약정	70.5
	⑦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70.3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69.3
	⑧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책임부담 약정	69.3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9.2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약정	67.7
	③ 입찰내역 미기재사항 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7.5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67.1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5.7
	⑪ 기성금, 준공금 등의 일부를 유보하여 준공 이후나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지급하는 약정	64.8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75.1
	④ 거래조건 착오나, 타 견적 또는 거짓 견적서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결정	73.8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73.7
	⑧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인하 등의 사유로 불리한 하도급대금 결정	72.6
	② 일방적 일정금액 할당 후 해당금액 제외된 하도급대금 결정	72.3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72.0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따른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71.3
⑤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71.0	
3. 부당한 위탁취소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76.9
	①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75.4
4. 부당한 감액	③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76.2
	⑤ 원도급사의 물품, 장비 등을 구매·사용하게 한 후 적정대금 이상 하도급대금 공제	75.2
	⑥ 대금지급 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5.1
	⑦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74.6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3.3
	①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2.8
	② 합의 성립 전 위탁부분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한 하도급대금 감액	72.6
5. 부당한 반품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79.8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79.4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78.3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78.2
6. 하도급대금 지급	④ 공사대금 중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72.9
	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70.2
	②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67.0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64.8
7. 하도급대금 조정	②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68.5
	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	68.3
	③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음	67.8
8. 보복조치 금지	① 원사업자가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74.9
9. 하도급대금 연동제	②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유무	75.9
	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는 행위	73.7

### 3. 구간분석

□ <표 III-15>는 조사대상 9개 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체감도 점수를 5점 간격의 구간에 표시하여 분포현황을 나타낸 것임

- 구간별 분포를 통하여 전반적인 불공정거래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표 III-15> 체감도 점수 구간별 분포

범주	항목	체감도 점수	51-55	56-60	61-65	66-70	71-75	76-80	81-85
1. 부당특약	①	70.6							
	②	69.3							
	③	67.5							
	④	70.5							
	⑤	69.2							
	⑥	65.7			////				
	⑦	70.3							
	⑧	69.3							
	⑨	67.7							
	⑩	67.1							
	⑪	64.8			////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①	73.7							
	②	72.3							
	③	75.1							
	④	73.8							
	⑤	71.0							
	⑥	71.3							
	⑦	72.0							
	⑧	72.6							
3. 부당한 위탁취소	①	75.4							
	②	76.9							
4. 부당한 감액	①	72.8							
	②	72.6							
	③	76.2							
	④	73.3							
	⑤	75.2							
	⑥	75.1							
	⑦	74.6							
5. 부당한 반품	①	79.8							
	②	78.2							
	③	79.4							
	④	78.3							
6. 하도급대금 지급	①	70.2							
	②	67.0							
	③	64.8			////				
	④	72.9							
7. 하도급대금 조정	①	68.3							
	②	68.5							
	③	67.8							
8. 보복조치 금지	①	74.9							
9. 하도급대금 연동제	①	73.7							
	②	75.9							

-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13개 항목 중에서 6개 항목이 76점 이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부당한 위탁취소; 2개 중 1개, 부당감액; 7개 중 1개, 부당반품; 4개 중 4개), 나머지 7개 항목도 71점 이상에서 75점 이하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공정거래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보복조치 금지, 하도급대금 연동제 범주에 속하는 11개 항목 중에서 11개 모두가 71점 이상에서 75점 이하로 나타나(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8개 중 8개, 보복조치 금지; 1개 중 1개, 하도급대금 연동제; 2개 중 2개) 상대적으로 공정거래의 정도가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당특약,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 18개 중에서 14개가 66점 이상에서 70점 이하로 나타나(부당특약; 10개 중 8개, 하도급대금 지급; 4개 중 2개, 하도급대금 조정; 3개 중 3개) 상대적으로 공정거래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부당특약과 하도급대금 지급에서 3개 항목이 61점 이상에서 65점 이하로 나타나(부당특약; 2개, 하도급대금 지급; 1개) 상대적으로 공정거래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당특약 범주에서 2024년 체감도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성금, 준공금 등의 일부를 유보하여 준공 이후나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지급하는 약정’이 64.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즉, 유보금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형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례조사를 통해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부당특약 범주에서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이 65.7점으로 낮게 나타났음. 이러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작업지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약정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그리고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에서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가 64.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이러한 공사대금을 지연시키는 문제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사를 수행한 건설인력의 인건비 지급을 지연시켜 가계생활을 어렵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게 됨.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는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항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항목의 체감도 점수는 해당 항목의 조사가 시작된 2017년 이후부터 2024년 현재까지 가장 낮은 점수대에 분포하고 있어 정부의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 또한 하도급대금 조정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낮은 체감도를 나타내고 있음. 최근과 같이 공사비가 크게 증가된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조정받지 못하거나 지연 조정받는 경우에 하도급업체가 받는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음
- 위와 같이 부당특약과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의 범주에서 체감도 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해당 범주의 불공정행위들을 중심으로 집중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4. Top 5 및 Bottom 5 분석

□ <표 III-16>은 체감도 조사대상 42개 전체 항목을 체감도 점수순으로 배열한 결과로써, 항목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순위를 파악할 수 있음

<표 III-16> 항목별 체감도 점수 순서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5.부당반품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79.8
5.부당반품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79.4
5.부당반품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78.3
5.부당반품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78.2
3.위탁취소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76.9
4.부당감액	③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76.2
9.하도급대금 연동제	②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유무	75.9
3.위탁취소	①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75.4
4.부당감액	⑤ 원도급사의 물품, 장비 등을 구매·사용하게 한 후 적정대금 이상 하도급대금 공제	75.2
4.부당감액	⑥ 대금지급 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5.1
2.하도급대금 결정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75.1
4.부당감액	⑦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	74.6
2.하도급대금 결정	④ 거래조건 착오나, 타 견적 또는 거짓 견적서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결정	73.8
2.하도급대금 결정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73.7
9.하도급대금 연동제	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는 행위	73.7
4.부당감액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3.3
6.하도급대금 지급	④ 공사대금 중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72.9
4.부당감액	①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2.8
4.부당감액	② 합의 성립 전 위탁부분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한 하도급대금 감액	72.6
2.하도급대금 결정	⑧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인하 등의 사유로 불리한 하도급대금 결정	72.6
2.하도급대금 결정	② 일방적 일정금액 할당 후 해당금액 제외된 하도급대금 결정	72.3
2.하도급대금 결정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72.0
2.하도급대금 결정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따른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71.3
2.하도급대금 결정	⑤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71.0
1.부당특약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70.6
1.부당특약	④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부담 약정	70.5
1.부당특약	⑦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70.3
6.하도급대금 지급	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70.2
1.부당특약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69.3
1.부당특약	⑧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책임부담 약정	69.3
1.부당특약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9.2
7.하도급대금 조정	②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68.5
7.하도급대금 조정	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	68.3
7.하도급대금 조정	③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음	67.8
8.보복조치 금지	① 원사업자가 추후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67.7
1.부당특약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약정	67.7
1.부당특약	③ 입찰내역 미기재사항 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7.5
1.부당특약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67.1
6.하도급대금 지급	②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67.0
1.부당특약	⑥ 재작업·추가 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5.7
6.하도급대금 지급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64.8
1.부당특약	⑪ 기성금, 준공금 등의 일부를 유보하여 준공 이후나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지급하는 약정	64.8

- 부당반품,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부당특약, 하도급대금 지급 및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하위권에 포진하고 있음
- Top 5 & Bottom 5 분석을 통해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 항목, 공정거래 체감도가 낮은 순으로 5개 항목을 선정하였음

□ <표 III-17>은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Top 5 항목을 선정한 것임

<표 III-17>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상위 5개 항목<sup>3)</sup>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5.부당반품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79.8
5.부당반품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79.4
5.부당반품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78.3
5.부당반품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78.2
3.위탁취소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76.9

-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은 1순위는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79.8점)’ 항목임. 상위 2순위는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79.4점)’ 항목임. 상위 3순위는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78.3점)’ 항목임. 상위 4순위는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78.2점)’ 항목임. 상위 5순위는 부당한 위탁취소 범주에 속하는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76.9점)’ 항목임

3) 2022년 및 2023년도 공정거래 체감도 상위 5개 항목은 다음과 같음.

<2022년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상위 5개 항목>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5.부당반품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목적물 등의 반품	76.5
5.부당반품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반품	75.1
5.부당반품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74.9
5.부당반품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74.2
4.부당감액	⑥ 대금지급 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4.1

<2023년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상위 5개 항목>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5.부당반품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76.8
3.위탁취소	①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75.4
5.부당반품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반품	75.3
5.부당반품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74.6
3.위탁취소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73.6

-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항목은 상위 1순위에서 4순위까지 해당하여 체감도 순위가 가장 높음
- 다음으로 부당한 위탁취소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상위 5순위에 올라와 있음
- 상위 1순위(5-①), 2순위(5-③), 4순위(5-②), 5순위(3-②) 항목은 2023년 조사에서도 Top5에 포함되었으며, 상위 1순위(5-①)는 동일하게 나타남
- 2022년도에도 부당반품에 해당하는 4가지 항목이 동일하게 상위에 포진하고 있어 상위권 항목의 변화가 크지 않음

□ <표 III-18>은 체감도 점수가 낮은 순으로 Bottom 5 항목을 선정한 것임

<표 III-18>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하위 5개 항목4)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1.부당특약	① 기성금, 준공금 등의 일부를 유보하여 준공 이후나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지급하는 약정	64.76
6.하도급대금 지급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64.83
1.부당특약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5.69
6.하도급대금 지급	②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67.00
1.부당특약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67.06

-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은 1순위는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기성금, 준공금 등의 일부를 유보하여 준공 이후나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지급하는 약정(64.76점)’ 항목임. 하위 2순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에 속하는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64.83점)’ 항목, 하위 3순위는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65.69점)’ 항목임. 하위 4순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에 속하는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67.00점)’ 항목, 하위 5순위는 부당특약

4) 2022년 및 2023년 공정거래 체감도 하위 5개 항목은 다음과 같음.

<2022년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하위 5개 항목>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6.하도급대금 지급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61.4
1.부당특약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2.4
1.부당특약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62.5
6.하도급대금 지급	②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62.8
7.하도급대금 조정	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	63.2

<2023년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하위 5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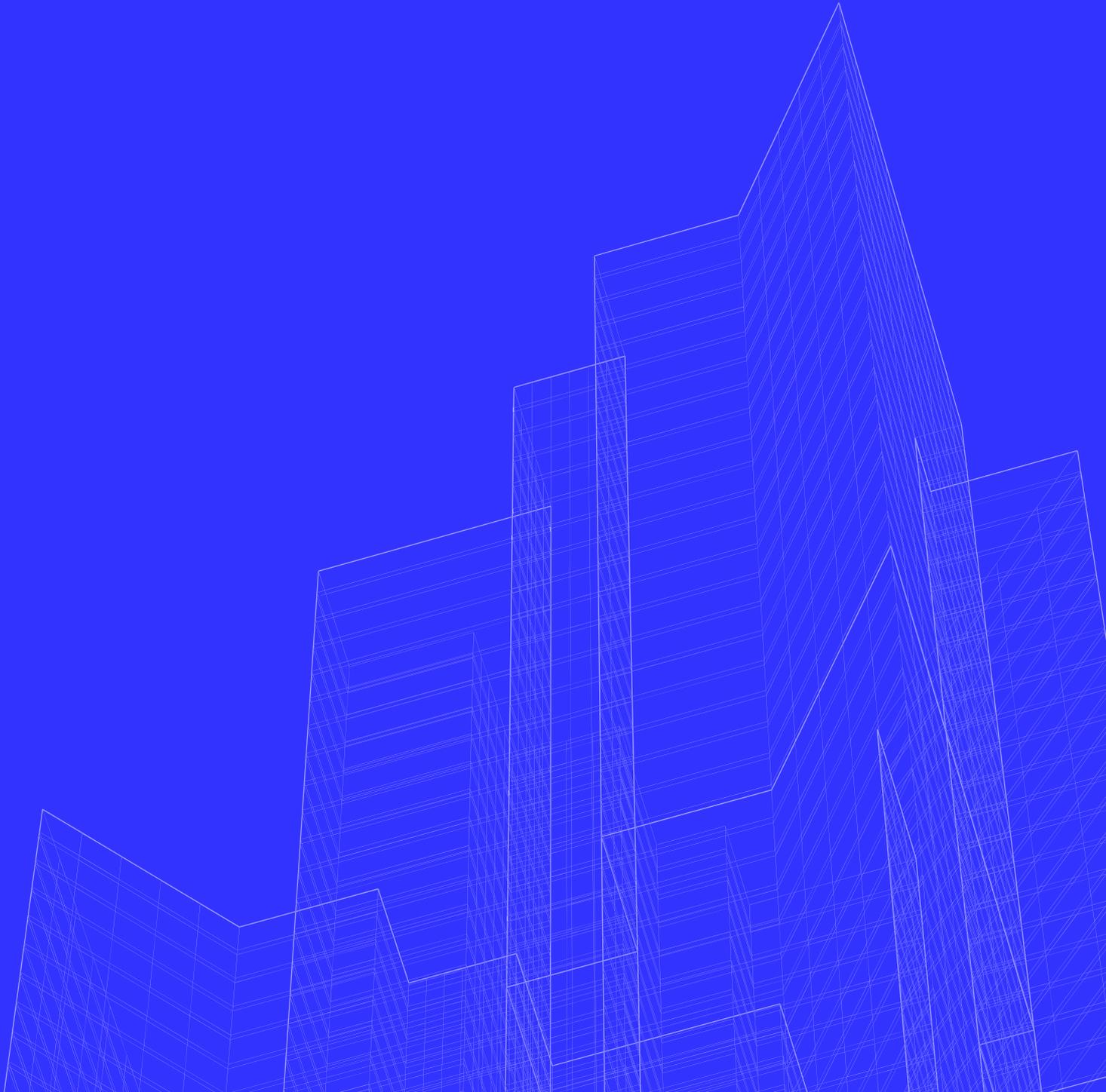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6.하도급대금 지급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60.9
1.부당특약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61.6
1.부당특약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약정	63.1
1.부당특약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3.1
2.하도급대금 결정	⑤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63.1

- 범주에 속하는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67.06점)' 항목임
- 하위 1순위(1-⑪)는 2024년 체감도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고, 하위 2순위(6-③), 3순위(1-⑥), 5순위(1-⑩) 항목은 2022년과 2023년 조사에서도 Bottom 5에 포함되었음
- 2022년도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에 해당하는 2가지 항목과 부당특약 범주에 해당하는 2가지 항목이 동일하게 하위에 포진하고 있어 하위권 항목도 변화가 크지 않음
- 새롭게 추가된 하위 1순위(1-⑪)의 '기성금, 준공금 등의 일부를 유보하여 준공 이후나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지급하는 약정'이 64.7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유보금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례조사를 통해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여전히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의 항목이 최하위권에 포함되어 있음. 하위 2순위(6-③)는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항목이고, 하위 4순위(6-②)는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항목임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연시키는 문제는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게 됨. 따라서 공사대금 지연 지급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는 엄격하게 관리하여 빠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도 꾸준히 하위권에 포함되어 있음. 하위 3순위(1-⑥)는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항목이고, 하위 5순위(1-⑩)는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항목임
- 부당특약과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의 범주에서 체감도 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정행위들은 공사단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관리되어야 함
- 입찰 및 계약 단계에서는 부당특약과 관련된 불공정행위, 공사진행 단계에서는 하도급대금 조정, 준공 이후 단계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부문으로, 각 단계별 중점 체크리스트 등이 마련되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

2024 통계보고서

# IV

## 결론





## 제4장

### 결론

- 본 조사는 건설하도급 거래의 공정거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도 하도급거래 실적에 있는 전문건설업체 16,497개 중 계통추출법에 의하여 4,950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2024년 6월 17일부터 7월 5일 사이(3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효하게 분석 가능한 응답지 403부(8.1%)를 회수하여 분석하였음.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pm 4.82\%$ 
  - 설문에는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보복조치의 금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9개 범주에 속하는 42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항목은 <표 I-2>, 설문지는 부록을 참고)
  - 체감도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건설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체감도 점수가 낮을수록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함
- 2023년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 점수는 72.0점으로 조사되었음

<표 III-1>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 점수(p.21)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점수	67.9	68.3	70.2	73.2	72.5	68.8	67.9	72.0
전년 대비 증감		0.4	1.9	3.0	-0.7	-3.7	-0.9	4.1

- 2024년 체감도 평균 점수 67.9점보다 4.1점 상승(↑)하였음
- 조사가 시작된 2017년 이후로 체감도 점수는 70점 전후로  $\pm 3$ 점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전반적으로 보면 2018년(68.3점; 0.4점 상승), 2019년(70.2점; 1.9점 상승), 2020년(73.2점; 3.0점 상승) 3년 연속으로 체감도 평균 점수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72.5점; -0.7), 2022년(68.8점; -3.7), 2023년(67.9점; -0.9) 3년 동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음. 그러다가 2024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내었음
- 2023년 건설기성액이 최고치를 달성하고, 같은 해에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나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제개정 방식 다양화와 의견청취 절차 강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개선,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및 낙찰 결과 공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동의를결제도 도입 등 다양한 하도급 관련 공정거래 정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2023년 건설수주 감소와 건축 허가 및 착공 면적 급감, 공사비 증가 등에 따라 2024년 이후의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는 다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024년도 하도급거래 동향에 대한 면밀한 주의와 관찰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임

□ 조사대상 9개 범주를 체감도 점수가 낮은 순서로 정렬하면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⑨하도급대금 조정(68.2점), ⑧부당특약(68.4점), ⑦하도급대금 지급(68.7점), ⑥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72.7점), ⑤부당한 금액(74.3점), ④하도급대금 연동제(74.8점), ③보복조치 금지(74.9점), ②부당한 위탁취소(76.1점), ①부당한 반품(78.9점) 범주 순서임

<표 IV-1> 범주별 체감도 점수

범주	부당반품	부당한 위탁취소	보복조치 금지	하도급대금 연동제	부당금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지급	부당특약	하도급대금 조정
체감도 점수	①78.9	②76.1	③74.9	④74.8	⑤74.3	⑥72.7	⑦68.7	⑧68.4	⑨68.2

- 부당특약 및 하도급대금 관련(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의 체감도 점수는 평균 점수 72.0점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하도급대금의 조정(68.2점)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고, 하도급대금 지급(68.7점) 범주의 체감도 점수도 하위 3개에 포함되어 있어 하도급계약의 가장 핵심적 사항인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거래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 부당특약(68.4점) 범주의 항목도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권한을 제한하거나 원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것과 관련된 항목의 점수가 낮아 금전 관련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원도급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비 상승 등의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체적으로 부당반품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78.9점으로 9개 범주 중 1순위로 가장 높고, 부당한 위탁(하도급계약) 취소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76.1점으로, 2순위로 조사되었음. 건설생산에서 목적물을 인수하지 않거나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음
- 그렇지만 다른 범주에 비해 체감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도 체감도 점수가 70점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해석에 있어서 관련 불공정행위가 일정 수준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구간분석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과 조정 및 부당특약 관련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대부분 70점 이하에 분포하여 공사대금, 비용 등 금전과 관련된 항목의 공정성 정도가 낮음. 분포 현황은 아래 <표 IV-2>와 같음

- 조사대상 9개 범주별로 체감도 점수가 70점 이하에 해당하는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해 보면,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11개 항목 모두가 체감도 점수 7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고 있어, 부당특약 범주는 체감도 점수 70점 이하 항목의 분포 비중이 100%임. 하도급대금 지급(4개 항목 중 3개), 하도급대금 조정(3개 항목 중 3개) 범주 또한 체감도 점수 70점 이하 항목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감액이나 반품 범주, 보복조치 금지, 하도급대금 연동제 범주는 70점 이하 항목이 하나도 없어(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8개 중 8개, 부당한 위탁취소; 2개 중 0개, 부당한 감액; 7개 중 7개, 부당반품; 4개 중 0개, 보복조치 금지; 1개 중 1개, 하도급대금 연동제; 2개 중 2개) 대체로 하도급 공정거래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임

<표 IV-2> 범주별 체감도 점수 분포 현황

범주 \ 체감도 점수	합계	51-55	56-60	61-65	66-70	71-75	76-80	81-85
부당특약	11			2	9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8					8		
부당한 위탁취소	2					1	1	
부당한 감액	7					6	1	
부당한 반품	4						4	
하도급대금 지급	4			1	2	1		
하도급대금 조정	3				3			
보복조치 금지	1					1		
하도급대금 연동제	2					2		
합 계	42			3	14	15	10	

□ Top 5 및 Bottom 5 분석 결과, 부당반품 및 부당한 위탁취소는 양호했지만,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불공정행위,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Top 5는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서로 배열하여 최상위 5개를 선정한 것으로 Top 5에 포함된 항목은 체감도 점수가 76점 이상으로(최고 79.8점, 최저 76.9점) 조사되었음
- Top 5 항목은 아래와 같음
  -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5-①, 79.8점)
  - ②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5-③, 79.4점)

- ③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5-④, 78.3점)
- ④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5-②, 78.2점)
- ⑤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3-②, 76.9점)

〈표 Ⅲ-17〉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상위 5개 항목(p.34)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5.부당반품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79.8
5.부당반품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79.4
5.부당반품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78.3
5.부당반품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78.2
3.위탁취소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76.9

- Bottom 5는 42개 전체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낮은 순서로 배열하여 최하위 5개 항목을 선정한 것으로, 불공정거래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함
- 부당특약 범주 3개 항목,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 2개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하위 항목의 체감도 점수는 60점대(최고 67.06, 최저 64.79)에 불과함
- Bottom 5 항목은 아래와 같음
  - ① 기성금, 준공금 등의 일부를 유보하여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지급하는 약정(1-⑪, 64.76점)
  - ②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6-③, 64.83점)
  - ③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1-⑥, 65.69점)
  - ④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6-②, 67.00점)
  - ⑤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1-⑩, 67.06점)

〈표 Ⅲ-18〉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하위 5개 항목(p.35)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1.부당특약	⑪ 기성금, 준공금 등의 일부를 유보하여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지급하는 약정	64.76
6.하도급대금 지급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64.83
1.부당특약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5.69
6.하도급대금 지급	②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67.00
1.부당특약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67.06

- 2024년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에서도 하도급대금 관련(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불공정행위와 하도급업체에 공사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로 나타났음

- 하도급대금 지급 및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에 속하는 대부분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60점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 하도급업체의 경영은 물론 현장 노동자의 소득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불법행위임
- 건설 수주의 급감이나 공사비 상승에 따른 이익감소 등의 경제적 요인이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경제적 이유로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허용될 수는 없음
-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원도급계약이 변경되어 공사대금이 조정되는 경우에 변경내용을 하도급계약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게 되거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비교적 적은 대금에 불과하더라도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에게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로 적극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통상 하도급계약 단계의 불공정거래에 관심을 많이 두는 경향이 있는데, 공사비가 급등하는 시기에 공사진행 단계의 하도급대금 조정이나 준공 이후의 공사대금 지급에서도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서도 제도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해 중간 거래가격 상승분이 하도급대금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해야 함
- 하도급업체의 입장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수취가 하도급계약을 맺는 궁극적 목적이 됨. 따라서 적절한 수준에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법령이나 계약으로 정해 놓은 시기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며, 원도급계약이 변경되면 그에 맞추어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이 하도급계약 이행의 핵심적인 요소임
- 그렇게 되면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자재업체, 장비대여업체, 현장 노동자 등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가 자신의 기여에 따른 대가를 받고 만족하게 되는 이상적인 상생공동체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국가 경제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정책 당국은 하도급업체가 자재와 장비를 조달하고 건설공사 현장 노동자를 고용하는 주체로서 하도급대금의 결정, 지급 및 조정은 참여자들의 직업 안정성과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공정거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2023),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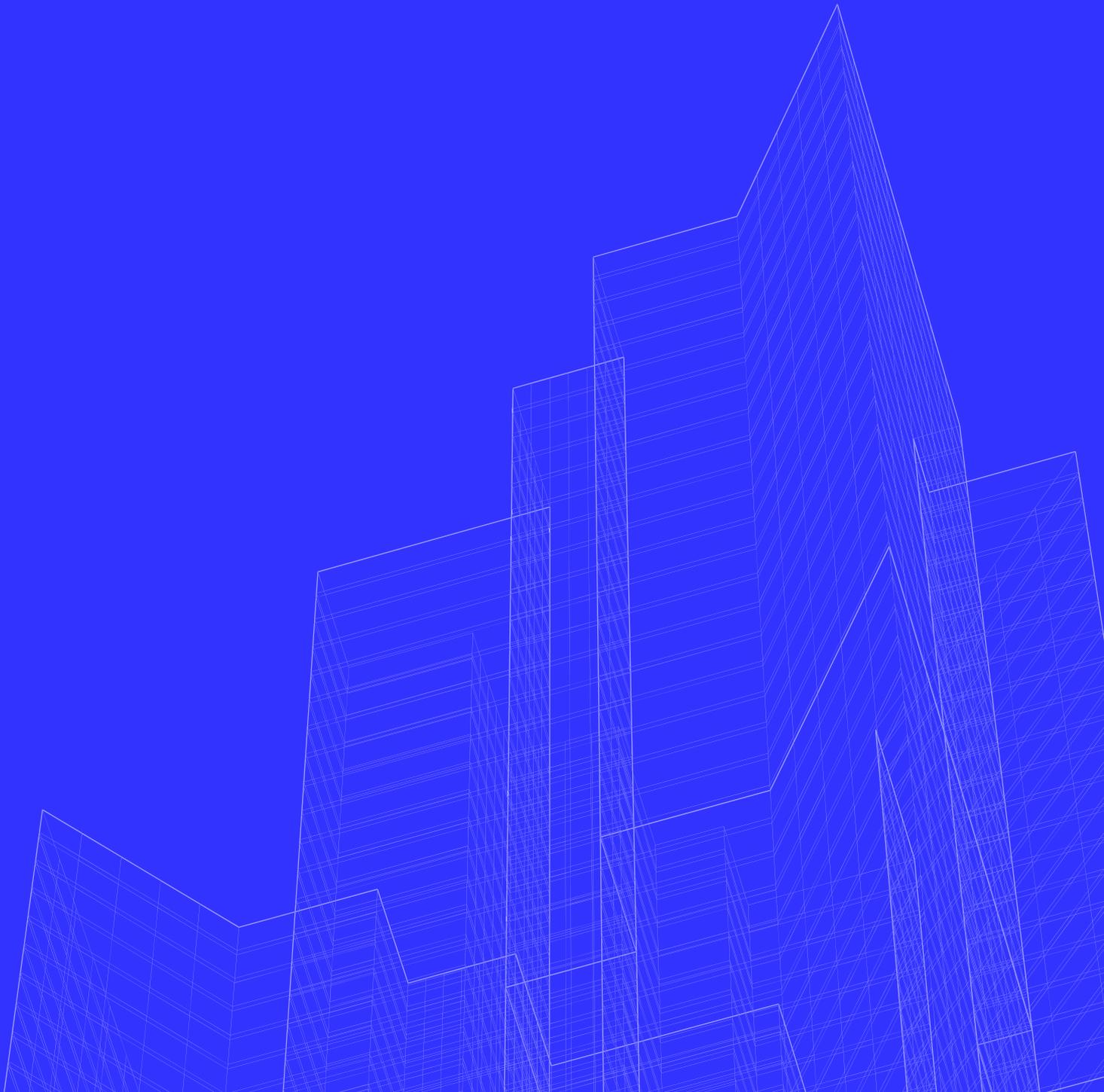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23A), 건설 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23B),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대한전문건설협회(2024), 전문건설업 실적신고 분석자료

# 부록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설문지





## 건설업 하도급거래 공정성 체감도 조사 설문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원·하도급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예방을 위하여 **부당특약 금지**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지난 **2023년 1년간 이루어진 하도급거래**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체감도 조사로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귀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내용은 집계자료로만 활용되어 응답자나 기업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므로 귀사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체감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조사대상: 전문건설업체 임직원
- ▲ 조사거래: **2023년** 1년 동안 이루어진 건설하도급거래
- ▲ 조사내용: 하도급법 상 불공정 거래행위
- ▲ 조시시점: 2024년 6월 17일 - 7월 5일
- ▲ 조사방법: 무기명 작성 → 팩스 제출

※ 항목을 잘 읽어보신 후 체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부당특약(하도급법 제3조의4)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계약시점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간접비(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수급사업자가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의 일부를 유보하여 준공 후 또는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지급하는 약정					

##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하도급법 제4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정당한 사유 없이 <b>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b>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b>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b>					
정당한 사유 없이 <b>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b>					
수급사업자에게 <b>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b>					
원사업자가 <b>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b>					
수익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b>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b>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b>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b>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b>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b>					

### 3. 부당한 위탁취소(하도급법 제8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4. 부당한 감액(하도급법 제11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5. 부당한 반품(하도급법 제10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거래상대방(발주자)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검사의 기준 또는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 6. 하도급대금 지급(하도급법 제13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하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지급기일(따로 약정한 기일이 없으면 최대 60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준공금을 지급하였으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현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론 제외)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7. 하도급대금의 조정(하도급법 제16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공사대금을 조정(증액) 받았음에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b>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는</b> 행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공사대금을 조정(증액) 받았음에도, 조정받은 날부터 <b>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b> 행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공사대금을 조정(증액) 받았음에도, <b>조정 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b> 수급사업자에게 <b>통지하지 않는</b> 행위					

## 8. 보복조치의 금지(하도급법 제19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수급사업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a·b·c·d)를 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b>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밖의 불이익을 주는</b> 행위 a.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관계기관 등에 신고 b.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거나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c.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 d.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					

## 9. 하도급대금 연동제(하도급법 제 2조 및 제 3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원사업자가 <b>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는</b> 경우					
원사업자가 <b>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아래 어느 하나(a,b,c)의 <b>탈법행위에</b> 해당하는 사례</b> a. 의도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b. 주요 원재료, 연동요건, 연동주기 등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하거나 명시하지 않는 행위 c.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등 계약서의 서면을 통한 미연동계약을 강요하거나 명시하는 사례					

# 2024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Construction Policy

